

2026년 인증부표 사후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5.

	성 명	직위	전화번호
담당	조용석	팀장	02-2240-3216
	김지선	과장	02-2240-3231
	송상협	직원	02-2240-323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www.suhyup.co.kr

목 차

I. 제안요청 개요	1
II. 제안요청 세부내용	2
1. 인증부표 사후관리 계획 수립	2
2. 인증부표 시판품 시료 채취 및 운반, 재납품	2
3. 인증부표 시판품 품질시험 수행	3
4. 사후관리 결과 보고	4
III. 과업수행 지침	4
IV. 입찰 참가 안내	7
V. 제안서 작성	14
VI. 입찰등록 제출서류	17
※ 참고 및 별첨	18

□ 추진배경

- 해양수산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보급한 인증부표의 품질관리 강화

□ 용역개요

- (용역명) 2026년 인증부표 사후관리 용역
- (발주자) 수협중앙회
- (추정금액)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허용

□ 주요과업내용

- 인증부표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인증부표 시판품 시료 채취 및 운반, 품질시험 및 재납품 수행
- 인증부표 품질관련 민원 등 발생시 공장 및 시판품 조사, 현장 대응 협업
- 사후관리 결과 보고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인증부표 사후관리를 통한 인증부표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안정화
- 원활한 인증부표 보급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추진일정(안)

번호	세부 추진 내용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인증부표 사후관리 계획 수립	■											
2	인증부표 사후관리 수행 - 시판품 시료 채취 등		■	■	■	■	■	■	■	■	■	■	■
3	착수보고 및 최종보고		■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II

제안요청 세부내용

1. 인증부표 사후관리 계획 수립

인증부표 사후관리 프로세스 로드맵 제시

- 시판품 시료 채취·운반·시험·재납품 계획 제시

2. 인증부표 시판품 시료 채취 및 운반, 재납품

수협중앙회로부터 인증부표 발주내역을 확보하여 시료 채취 계획 수립

- 총 시험 횟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 계획 수립
- 채취 계획 수립시 납품 물량을 감안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중복되거나 대상 지역이 특정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함

시료 채취 및 운반

- 자체 확인한 업체별 납품일정에 맞추어 해당 납품지 방문
- 어업인에게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함을 설명하고, 시료

채취에 따라 납품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만큼 추가로 납품될 예정임을 안내

- 채취한 시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봉인한 후 시험장소까지 운반

□ 시료 재납품

- 채취한 시료와 동일제품 및 동일수량을 해당 어업인에 재납품

3. 인증부표 시판품 품질시험 수행

□ 채취한 각 시료별 다음 시험 실시

- 80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부표 형태에 적합한 시험방법을 따라 부표 1개당 3~5가지 검사진행

* 시험 항목별 실시방법은 해양수산부 「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별표1 '인증부표 인증기준' 참조 (참고1)

- 필수시험(2) : 내충격성, 부력
- 선택시험(5) : 내면밀도, 로프조임 시험, 접합부 피로시험, 내압시험, 결속고리하중 안정성 시험

- 내면밀도 : 발포용 부표에 한함
- 로프조임 시험 : 발포형(해조류 양식용)
- 접합부 피로시험 : 2개 제품을 접합하는 부표에 한함
- 내압시험 : 발포형(해조류 양식용) 및 어류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용 부표(100L 이상)는 제외
- 결속고리하중 안정성 시험 : 로프를 결속하는 고리가 있는 부표에 한함

* 선택시험의 경우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부표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험 실시 후 시료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월에 실시한 시료별 시험결과는 익월 5일까지 제출
 - * 12월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마지막 시험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시험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협중앙회에 해당 사실 즉시 통보
→ 제안자는 수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재시험 진행

□ 특별현장점검 실시

- 다수 민원 발생업체 등 필요한 경우 발주처가 요청하며, 제안자는 해당 업체 공장점검 또는 시판품조사 등 시행*
 - *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 추진 등

4. 사후관리 결과 보고

□ 시판품 시험결과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수거 제품별 시험실적을 취합하여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출력물 및 전자파일, 계약종료일 까지)
 - *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 일반사항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수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자들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고 적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세부추진일정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안전보건 계획서 등을 공문으로 제출

□ 진도 · 보고 관리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에 대하여 착수, 수시 및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는 과업수행자가 매월 용역수행결과를 익월 5일*까지 수협중앙회에 보고
 - * 매 익월 5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고

□ 과업변경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수협중앙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책임소재 · 계약해지

- 본 과업의 수행 시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와 관련 법령*(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5.10.1.시행)」

- 수협중앙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의 잘못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가 계약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과업 수행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수협중앙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경우
 - 보완요구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이 수협중앙회의 보완요구에 위배될 경우
 - 수협중앙회의 특별한 사유로 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은 수협중앙회에 귀속되며, 수협중앙회가 특별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급할 모든 자료 및 결과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해 철저한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지며 이로 인한 수협중앙회의 민·형사상 배상 요구에 불복하지 않아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관련자료 및 정보 등은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수협중앙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기타사항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및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상호 협상 과정을 통해 추후 변동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내용상의 오류 및 수정·보완 등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협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재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과업 보완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결과보고서는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협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수협중앙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물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요구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IV

입찰 참가 안내

□ 입찰 참가자격

-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없이 입찰 참여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29호, 2026.1.2.)」을 따름
- 최근 3년('23년~'25년)이내 단일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품질 시험(인증) 또는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일반조건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관련 법규 및 수협중앙회 내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수협중앙회의 소유로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용역기간 중 상호 협의를 통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계약 가능

□ 선정 · 평가 방법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9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가격이 해당 추정금액 이하인 자로서 종합평가(100점=기술평가 80점+가격평가 20점)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항목 · 배점기준

구분		심사내용	기준	평가점수
기술평가 (80)	객관적평가 (20)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표 하단	5
			(1) 경영상태 평가기준	4.5
			참고	4
			참고	3.5
		수행실적 (10) ■ 수행했던 단일 실적의 규모	표 하단	10
			(2) 단일수행실적 평가기준	9
			참고	8
			참고	7
		기술인력보유상태 (5)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 수(인증부표 시판품 품질시험 수행인력에 한함)	A. 10명 이상	5
			B. 8명 이상	4
C. 6명 이상			3	
D. 5명 이하			2	
주관적평가 (60)	사업이해도 (2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배경·목적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표의 적절성 - 제안사 특·장점 차별성	A. 매우우수	20	
		B. 우수	18	
		C. 보통	16	
		D. 미흡	14	
		E. 매우미흡	12	
	과업수행능력 (20) ■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 계획의 체계성 및 구체성 - 제안 내용의 전문성 및 차별적 독창성	A. 매우우수	20	
		B. 우수	18	
		C. 보통	16	
		D. 미흡	14	
		E. 매우미흡	12	
사업관리 (20) ■ 사업관리능력 - 사업수행 관련 업무분장, 추진일정 및 관련기관과의 소통능력 - 보안관리 구체성 -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 등	A. 매우우수	20		
	B. 우수	18		
	C. 보통	16		
	D. 미흡	14		
	E. 매우미흡	12		
가격평가(20)		■ 입찰 가격의 적정성 / 표 하단 (3) 입찰가격평가 기준 참고		

< (1)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8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근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 (2) 단일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등급	평점
A. 1억원 이상	10
B. 8천 5백만원 이상~1억원 미만	9
C. 7천만원 이상~8천 5백만원 미만	8
D. 7천만원 미만	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25)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적용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근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준용

< (3) 입찰가격평가 기준 >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함.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협상 중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으며, 재협상 시에도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마감기한 : '26. 6. 17.(수) 14시까지 서류 제출(방문접수)
- 제출장소 :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8층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증빙서류 1부

* 별지서식 참조,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제출

□ 제안설명회

- 일 자 : '26. 6. 18.(목) 예정(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통보)
- 설명시간 : 업체당 최대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타 업체 방청 불가)
- 발표자 : 본 과업을 수행할 담당자가 직접 설명(위반 시 자격 박탈)
 -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문의 및 변경 가능
- 발표자료는 PPT로 진행, 발표 당일 배포하려는 참고자료는 사전 발주 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제출

* 제안설명 시 업체별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 제안 관련 일반사항

- 마감 시각 이후 접수 불가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에 대한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 처리 함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제안서 목차(권고)

작성항목	작성방법
I.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 본 용역의 제안배경을 명확하게 기술
2. 제안 목적	- 본 용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을 기술
3. 사업 수행전략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전략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전문성, 인력투입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본 사업에 투입할 기획인력 기재
3. 사업 추진실적	- 최근 3년간('23년~'25년) 관련분야 유사 사업 실적 기술
III. 사업 수행부문	
1. 사업 수행방안	- 인증부표 시판품 사후관리 계획(시판품 시료 채취 및 운반부터 시험, 재납품 과정, 특별현장점검 등 모두 포함)
2. 세부 수행일정	- 구체적인 용역수행 일정표 및 일정별 수행내용
IV. 사업 관리부문	
1. 사업 관리계획	- 추진조직, 업무분장, 발주자 및 관련기관(업체)과의 협력방안 등
2. 사후관리	- 사후관리(시험결과 통보, 결과보고서 작성 등) 방안
IV. 기 타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추가 기술 가능

□ 작성 지침

구 분	내 용
규격	A4 백색용지 양면 가로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세로 인쇄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매수	제안서 30페이지 내외
부수	제안서 10부, 증빙자료 1부
본문	각 페이지는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 일련번호는 1, 가, 1), 가), ①, ②순으로 부여)
제본	실이나 끈이 아닌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철(위로 넘기기) 제본함으로써 임의 수정 보완을 방지하여야 함
기타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 사용 불가), 제안요청서 이외의 기타 건의 또는 향상된 내용 제안 가능

□ 제안서 효력

- 제안서 및 추가제안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내규를 준용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 부담

VI

입찰등록 제출서류

NO	구 분	수량	비 고
1	제안서	10부	
2	가격입찰서	1부	<서식1>
3	가격 산출내역서	1부	<서식2>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3>
5	입찰보증금	1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6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4>
7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서식5>
8	용역 실적증명원	1부	<서식6>
9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서식7>
10	투입인력 총괄명부	1부	<서식8>
11	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9>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식10>
14	서약서	1부	<서식11>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서식12>
1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7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안서 인감 대조용
18	법인등기부등본	1부	
19	위임장	1부	입찰 및 제안 대리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20	사용인감계	1부	
2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22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23	공동수급협정서	1부	
24	기타		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인증부표 인증기준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하고 있는 부표 중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대체할 목적으로 생산된 부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 인증부표 인증시험 기준에 다음의 인용표준을 인용하여,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인증을 신청할 당시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또한 인증표준의 개정에 따라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표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인증부표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폐지 전 표준을 잠정 적용한다.
 -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축진 노출 시험 방법
 -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시험방법
 - **KS M 1072**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 **EN 71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3. 시험 기준

3.1 품질 관련 기준

- 겉모양은 4.4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겉모양은 변형 및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핀홀, 기포 및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라. 표면을 발포한 부표는 입자 사이가 견고하게 융착되어야 한다.

마. 표면이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예리한 돌기 또는 거스러미가 없이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3.2 성능 관련 기준

○ 성능은 4.에 따라 시험하며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인증부표의 성능기준

시험 항목		성능 기준				시험 방법
치수(규격, 무게, 부피 등)		부표의 길이, 높이, 무게(사진 포함) ±3% 이내, 부피 ±5% 이내 등				4.5
부력(kgf)		[(표시부피(L)×0.7) - 자체무게(kgf)] 이상				4.6
내면밀도(kg/m ³)		18 이상				4.7
내충격성 시험		표면에 균열, 파손, 찌김이 없을 것				4.8
해양환경폭로 시험		부표에 균열, 파손, 찌김이 없어야 하며, 초기 부력의 80% 이상일 것('내압시험' 또는 '축진내후성'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음)				4.9
열피로도 시험		부표 외형의 균열, 파손 및 찌김 등이 없어야 하며 초기 부력의 90% 이상일 것				4.10
로프조임시험		표면의 패임, 갈라짐이 없을 것				4.11
내압시험(압력표시)		초기 부력의 90 % 이상일 것(1bar 이상)				4.12
접합부 피로시험		초기 부력의 90 % 이상일 것				4.13
결속고리하중안정성시험		부표 및 결속 고리의 파손이 없을 것				4.14
축진 내후성 (2 000 시간)	연질 피복부분	축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4.15
	발포형, 사출형, 경질피복, 기타형태 부표		80 이상		표면에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환경 유해성	유기주석화합물(TBT,TPT)		검출되지 않을 것			4.16
	중금속(mg/kg) (Sb,Cr,As,Pb,Ba,Hg,Cd, Se)	안티모니(Sb)	560 이하	크롬(Cr)	460 이하	
		비소(As)	47 이하	납(Pb)	23 이하	
		바륨(Ba)	18,750 이하	수은(Hg)	94 이하	
카드뮴(Cd)	17 이하	셀레늄(Se)	460 이하			
난연제(mg/kg)		PBBs, PBDEs TBBPA, HBCD 검출되지 않을 것				
재질시험		연질·경질 피복부표		내·외부 재질 성분이 동일할 것		4.17
		피복형부표 (100L이상일 시) 사출형,발포형,기타형태		신청한 재질과 동일할 것		
		기타 형태(금속재질)		신청한 재질과 동일할 것		

* 부표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해 임의의 부위를 채취하여 환경유해성 시험 3종을 실시하며, 내외부 모든 재료에 대해 환경유해성 시험 3종을 실시한다.

*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질(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결과를 적용하여 축진내후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인증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종전 인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제품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 축진내후성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동일 원료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플라스틱류 및 비금속계열: 재질시험(정성분석), 밀도, 회분(발포재질은 제외)
- 금속계열: 재질분석(Si, Fe, Cu, Mn, Mg, Cr, Zn, Ti, Al)

* 인증부표(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외 새로운 부표(모양, 재질 등)를 생산·인증받으려는 경우 인증시험 접수 前 품질인증위원회의 신규부표 적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4. 시험방법

4.1 시험편의 상태 조절

- 시험편은 온도 (23±5) °C, 상대습도 (50±10) %로 유지되는 시험실에서 시험 전에 16 시간 이상 유지해야 한다.

4.2 시료 및 시험편

- 시료는 원칙적으로 성형 후 24 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 중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은 시료 몸체에서 잘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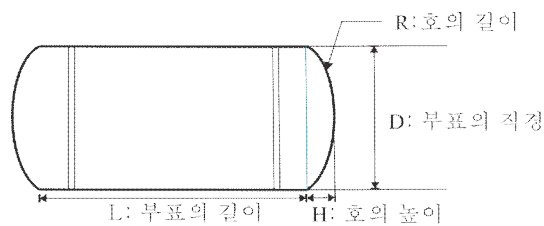
4.3 수치의 맺음법

- 수치는 KS Q 5002에 따라 끝맺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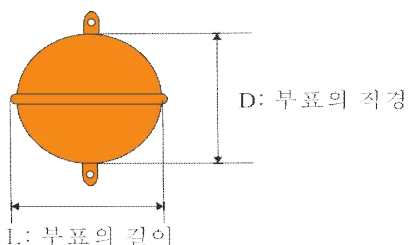
4.4 결모양

- 표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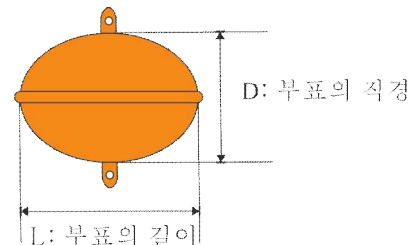
4.5 치수



(A타입) $(\pi \times D^2)/4 \times L + (\pi \times D^2 \times H)/6$



(B 타입 부피) $\pi \times D^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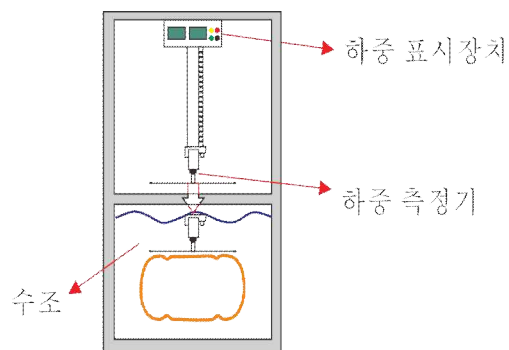
(C 타입) $(\pi \times D^2 \times H)/6$

[그림 1] 인증부표의 치수·부피 측정

- 부표의 길이는 3개 이상의 부표시료를 이용하여 가장 긴 부분을 1 mm 정밀도로 3회 측정하고, 높이는 부표의 1 mm 정밀도로 시료별로 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한다. 부표 모양이 특이한 경우에는 부표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 위치를 선정하여 측정하거나, 각 부위의 수치가 표시된 제품제작서 등과 비교하여 측정해야 하며, 사진 또는 그림을 첨부해야 한다.
- 부표의 무게는 검교정된 전자저울(정밀도 0.01kg 이상)을 이용하여 kg 단위로 측정한다. 무게는 3개의 이상의 부표(시료)를 대상으로 각각 측정하고 산술평균값을 계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 계산 부피는 [그림1]과 같이 측정하며, 그 외 모양이 특이한 경우에는 산술적인 계산식에 의해 측정 계산하고, 그림으로 측정 위치를 표시한 후 계산식을 표현하여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계산 부피는 리터(L)로 나타내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한 후 정수자리로 표현한다.
- 치수·부피와 관련하여 3D 형상측정기(정밀도 0.01 mm)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4.6 부력

- 부력 측정 장치 안에 부표를 설치한 후 표면이 수면 아래 20 cm까지 하중을 가하고 부표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정지한 후 0.1 kgf 의 정밀도로 하중을 측정한다.



[그림 2] 부력 측정 장치 및 부력시험 모식도

4.7 내면밀도 [발포용 부표에 한함]

- 시험편은 부표의 내부 중심부 지점에서 두께 50 mm, 길이 50 mm, 너비 50 mm 크기 2 개를 잘라낸다. 표면을 피복한 부표는 표면의 피복 재료를 제거하고, 표면층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 채취한 시험편을 (70±5) °C에서 24 시간 건조한 후, 각각의 밀도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2 개의 평균값으로 각 층의 밀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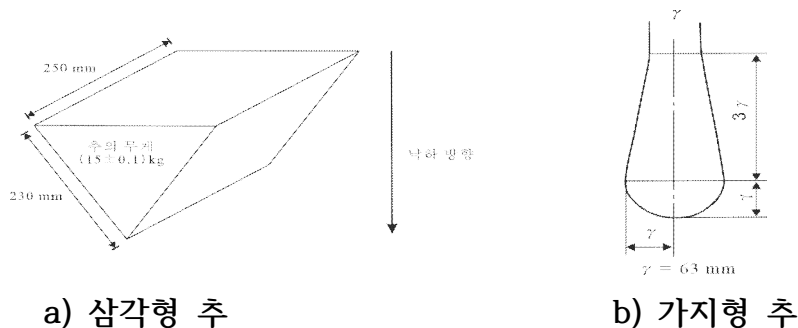
- 시험편의 부피는 두께, 길이 및 너비 각각 3 곳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치수는 0.5 mm, 질량은 0.1 g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text{밀도}(\text{kg}/\text{m}^3) = W^1/V^2)$$

1) W : 질량(kg) 2) V : 부피(m³)

4.8 내충격성

- 부표를 두께 (2±1) cm 금속판 위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된 부표의 상단 표면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200 cm 높이에서 삼각형 추 또는 가지형 추 [그림 3]를 낙하시켜 부표 표면의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발포부표에 피복·코팅한 부표는 [그림 3]의 a)삼각형 추를 사용한다. 삼각형 추는 한 변이 230 mm인 정삼각형 모양으로 길이는 250 mm,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 단, 김양식용 발포부표인 경우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하며, 시험 후 부표 표면 및 내부의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 사출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10±0.1) kg 이어야 한다. 사출부표의 충격지점은 접합부위가 아닌 가장 두께가 얇은 곡면 부위를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 기타 부표로 에어셀, PET병,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및 PVC 재질 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하며, 추의 무게는 (10±0.1) kg 이어야 한다. 충격시험은 부표의 몸통에서 가장 두께가 얇은 부위를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여러 개의 셀을 이용하여 부표다발을 구성한 경우에는 부표다발을 결속하는 사출품을 충격지점으로 한다.
- 상기 이외의 부표는 공인시험기관이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인증부표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험법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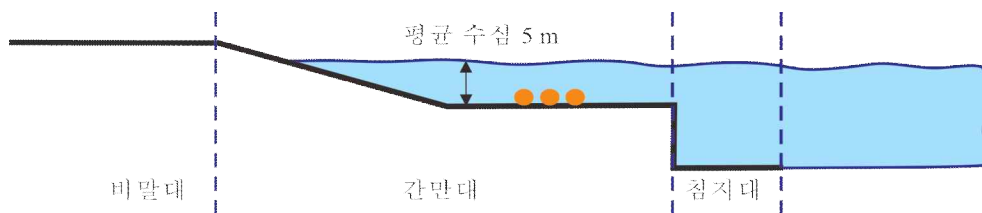
[그림 3] 내충격성 시험용 추의 종류

4.9 해양환경폭로시험

- 부표의 해양환경폭로시험은 평균수심 5 m 이상 실제 해수가 있는 장소에서 [표 2]의 규정된 로프를 사용하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한 후, 2 개월 동안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였을 때, 수압을 받는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초기부력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로프의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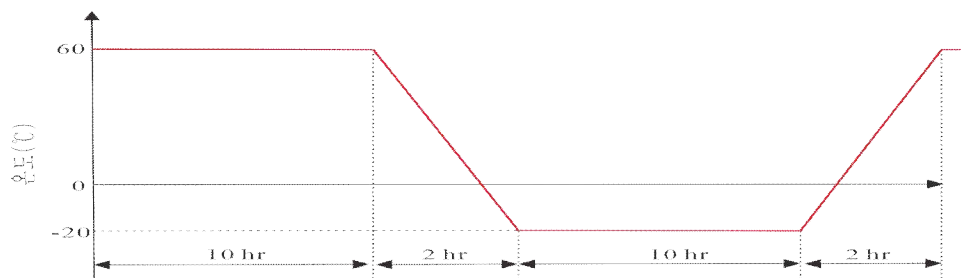
합 사 수	무 게	두께
3합	9.6kg / 200m ± 10%	10mm



[그림 4] 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를 이용한 해양환경폭로시험 모식도

4.10 열피로도 시험

- 부표를 제품상태 그대로 시험을 수행한다. 만일 부표의 크기가 열피로도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 하여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다.
-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60±2) °C에서 10 시간, (-20±2) °C에서 10 시간을 유지한다. 이 시험을 1 cycle로 하여 15 cycle 시험을 실시한다. 단, 1cycle 내의 감온 및 승온 시 온도변화는 분당 (0.6 ± 0.2) °C로 한다.
- 열피로도 시험이 종료된 직후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부표 외형의 균열, 파손 및 찢김 등이 없어야 한다. 외관검사가 종료되면 부표의 상단이 수면아래 (20±2) cm 의 깊이로 24 시간 동안 담수에 침수 시킨 후 부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부력을 측정한다.



[그림 5] 열피로도 시험(1 cycle)

4.11 로프조임 시험 [발포형(해조류 양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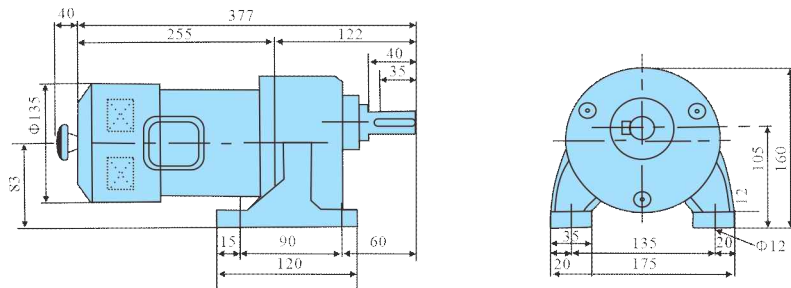
- 로프조임시험은 완제품 형태의 부표를 로프조임 시험기에 거치한 후, 표준 로프를 이용하여 2회 반복 로프조임시험을 실시한다.
- 표준 로프 및 부표에 가해지는 표준 모터의 제원은 [표 3] [표 4]와 같다. 로프조임시험 후, 부표의 표면이 패임으로 인한 파손 및 갈라짐이 없어야 된다.

[표 3] 표준 로프 규격

로프규격	합사수	무게	두께
	3합	9.6kg / 200m ± 10%	10 mm

[표 4] 표준 모터 규격 및 조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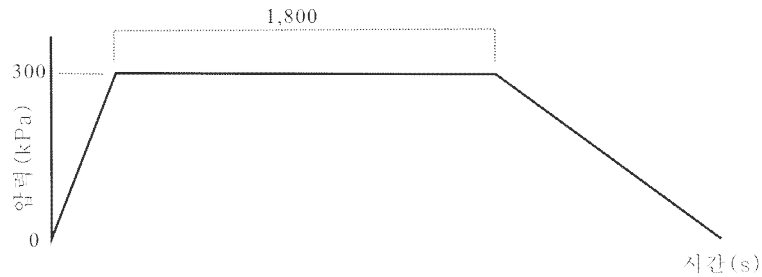
출력	감속비	RPM	조임 시간
0.4. Kw	1/60	1730	5 ± 0.2 초



[그림 6] 표준 모터 상세

4.12 내압시험 [발포형(해조류 양식용) 및 어류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용 부표(100L 이상)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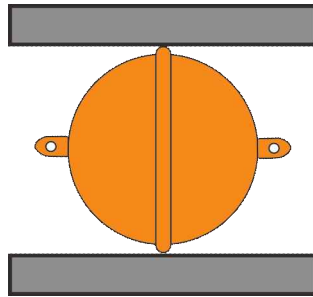
- 내압시험에 사용되는 부표는 완제품 형태의 부표를 사용한다. 내압 시험 전에 부표의 무게 및 부력을 측정하여 기록한 후 최대 압력 50 bar 이하 수준의 고압 챔버를 이용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한다.
- 압력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100 kPa(1 bar), 200 kPa(2 bar) 및 300 kPa(3 bar) 이상 수준에서 실시하고, 300kPa(3 bar) 이상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고유 모델명에 수압용·심해용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내압시험은 30분 ± 2분 까지 압력을 유지하여 30분 경과후 종료 시의 최종압력을 기록한 후, 그 다음 압력을 기계적으로 제거한 후 즉시 부표를 꺼내어 무게를 측정한 뒤 부력을 측정하고, 그 측정값은 초기부력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의뢰자가 내압시험 시 시험한 압력은 성적서에 표기해야 한다.[그림 7 참조]



[그림 7] 가압 시험 조건(300 KPa 예시)

4.13 접합부 피로시험[2개의 제품을 접합하는 부표에 한함]

- 하중 가압판에 부표의 접합부위를 [그림 8]과 같이 수직으로 고정하고 10 mm/min 의 가압 속도로 (3,000±30) N 까지 하중을 재하한 후, 20 mm/min의 속도로 하중을 제거한다. 이 시험을 1 cycle로 하여 총 20 cycle을 실시한다.
- 피로시험이 종료되면 부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부표의 상단이 수면아래 (20±2) cm 의 깊이로 24 시간 동안 침강 시킨 후 부력을 측정한다.



[그림 8] 하중 가압판과 접합부위의 고정 위치

4.14 결속고리하중 안정성 시험[로프를 결속하는 고리가 있는 부표에 한함]

- 사출형 부표의 상·하단에 로프를 결속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경우, 결속 고리로 로프를 매달아 5,000 N의 인장하중을 가하여 부표 및 결속 고리의 파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4.15 축진내후성 시험

- KS F 2274의 6. 시험방법 표 2 노출시험방법 WX-A에 따라 시험편을 축진열화 시킨다.
- 축진내후성 시험시간은 2,000 시간으로 하며, 성능은 [표 1]에 적합해야 한다. 단, 타포린 계열 재질은 Q-UV 시험기를 이용해 축진내후성 시험을 진행한다.

- 촉진내후성 시험 전·후 연질 피복 부표의 신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표 5]과 같이 시험하며, 신장률 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험편 3 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단, 표면을 발포한 부표나 사출형, 경질 피복 부표 등은 촉진내후성 시험 후에 표면의 균열, 파손, 녹아내림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E_B^{1)}(\%) = (E_1^{2)}/E_0^{3)}) \times 100$$

1) E_B : 신장률 비(%) / 2) E_1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 3) E_0 : 촉진내후성 시험 전 신장률(%)

[표 5] 촉진열화 전·후 신장률 시험조건

표면재료	시험편	시험 속도 (mm/min)	시험 수 (개)
폴리우레아 계열	KS M 6518의 5.2.1의 아령형 3호형	500	3
타포린 계열	KS K 0521의 8.2 시험편	100	3
폴리에틸렌(PE) 계열	KS M 3001의 6.1 시험편 그림 1. 2호형	500	3
폴리프로필렌(PP) 계열	KS M ISO 527-3의 그림 2. 5호형	500	3

4.16 환경유해성시험

- 부표의 구성재질이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환경유해성시험을 실시한다.
- 부표의 내부에 발포재료가 포함된 연질 피복부표 또는 경질 피복부표의 경우에는 내·외부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환경유해성시험을 실시한다.
- 유기주석화합물 시험은 KS K 0737에 따라 실시한다.
- 중금속 시험은 EN 71 Part 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난연제 시험은 KS C IEC 62321, KS M 1072에 따라 실시한다.
- 내부에 발포재료가 포함된 경우 내부 중심부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4.17 재질시험

- 부표의 내부와 피복이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였을 경우, KS M 0024 9. 정성분석 시험방법에 따라 내부와 피복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 피복형부표(100L 이상일 시), 사출형, 발포형, 기타형태의 부표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재질과 동일한 재질인지 확인해야 한다.


- 기타 형태의 부표 중 금속재질의 부표는 KS D 0228 및 KS D 1678, ASTM E1251 시험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5. 검사

-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 방법으로 겉모양, 치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표시사항

- 인증부표는 스티커를 제외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가. 제품명(제조연도)	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나. 치수(규격), 부피(L)	마. 내압시험 결과(1 ~ 3 bar)
다. 제조업체명	바. 재질(내부, 외부)
사*. (보증금 표식)  어구·부표 보증금	

*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7. 기타

- 인증부표 인증을 받기 위한 부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치수, 무게, 가로세로비, 부피를 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며, 부표 사진을 포함한 공인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치수와 무게의 값과 $\pm 3\%$ 오차범위 내에서 신청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부피는 $\pm 5\%$ 오차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하다.
- 인증부표 인증을 받기 위한 부표는 **개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명칭(동일명칭 사용 금지)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성적서의 명칭과 인증부표 품질인증 신청서의 명칭이 일치해야 한다.**

[별 첨]

〈서식 제1호〉	가격입찰서
〈서식 제2호〉	가격 산출내역서
〈서식 제3호〉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4호〉	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5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제6호〉	용역 실적증명원
〈서식 제7호〉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8호〉	투입인력 총괄명부
〈서식 제9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 제11호〉	서약서
〈서식 제12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가 격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식			%	
		식			%	
		식			%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식			%	
		식			%	
		식			%	
		식			%	
		식			%	
		식			%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 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운 (③+④의 10%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총 합 계				천원미만 절사	%	

※ 이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양식이므로 내용에 따라 항목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u>주요연혁</u>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약금액이 높은 단일실적 순으로 기재		

- ※ 1. 최근 3년간('23년 ~ '25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만 기재함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 제6호)를 첨부하여야 함
3.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4.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용역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분야	○○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서식 제9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본사업 참여임무			
자격사항							
경 력 사 항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용역수행실적							
발주기관	계약금액		참여역할		비고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포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물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명		부서명	직급	성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2026년 월 일

확약자 주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수협중앙회와 2026년 인증부표 사후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